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설치·운영 지원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2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설치·운영 지원(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7.

다.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설치·운영 지원(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시설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란</u>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u> <u>이 경우 인력과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u> <u>나. 문화예술 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u> <u>다.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기준</u>

현행	개정안
4. 5. (생략)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1. (생략) ② ~ ⑤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1. ~ 6. (생략) <u>6의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7. ~ 11. (생략) ② ~ ⑤ (생략)

현행법¹⁾은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설치·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기반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의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전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²⁾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2)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지역의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2022년까지 전국 13개 시·군·구 조성).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참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사업명)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 (내용) 지역별 문화예술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특징) 신규 조성이 아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청소년과 주민에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판 아난딸로 아트센터’* 조성
- * 아난딸로 아트센터(핀란드): 폐교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공간
- (기간/규모) '18년 ~ '22년 / 국비 총 164.45억 원

□ 현황: 전국 13개 시·군·구

	지역	시·군·구	위탁기관	공간	규모 (연면적)
1	경기	성남시	성남 문화재단	성남 꿈꾸는 예술터 (舊 영성여중)	4,913㎡
2		포천시*	포천문화 관광재단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舊 영평초등학교)	1,555㎡
3	강원	강릉시	강릉 문화재단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舊 경포초)	1,049㎡
4		태백시	태백시 문화재단	탄광사택 누리큐브 (舊 탄광사택촌)	1,440㎡
5		춘천시	춘천 문화재단	춘천 꿈꾸는 예술터 (舊 춘천교육지원청)	2,202㎡
6	충북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 진흥재단	청주 꿈꾸는 예술터 (舊 연초제조창)	1,388㎡
7	전북	장수군	장수예술누리 협동조합	장수 꿈꾸는 예술터 (舊 장안초)	2,078㎡
8		전주시	전주 문화재단	팔복야호예술놀이터 (舊 쏘렉스공장)	4,443㎡
9	전남	고흥군	고흥문화 도시센터	고흥 꿈꾸는 예술터 (舊 고흥평생학습관)	1,002㎡
10	대구	수성구	수성 문화재단	들안예술마을 꿈꾸는 예술터 (두산동/상동)	683㎡/ 441㎡
11	경남	밀양시	밀양문화 관광재단	밀양 꿈꾸는 예술터 (舊 월산초)	1,290㎡
12		창원시	창원시 직영	날마다 꿈꾸는 예술터 (舊 창원터미널 공영주차장)	1,767㎡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 예술재단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 (舊 중문소방파출소)	624㎡

*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는 꿈꾸는 예술터 공모사업으로 선정('21.11.)된 후 국비를 일부 반납하였으나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무리된 사업